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46 발의연월일: 2025. 6. 12.

발 의 자:황운하·강경숙·신장식

김준형 • 박은정 • 전용기

김재원 • 백선희 • 서왕진

차규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, 즉시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일시적인 인력 부족이나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·중소기업도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되며, 이는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음.

이에 「소상공인기본법」 및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, 등 록기준 미달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 한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, 일시적 경영상 위기를 겪는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회복 기회를 부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영세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완화하고, 도시정비사업 수행의 지속 가능성과 공 공성을 함께 확보하고자 함(안 제106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개월이 지난 때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) 제10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6조(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	제106조(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
등록취소 등) ① 시·도지사는	등록취소 등) ①
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	
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	
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	
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• 제4호	
•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	
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	
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	2
준에 미달하게 된 때 <u><단서</u>	<u>다만,</u>
<u>신설></u>	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
	따른 소상공인과 「중소기업
	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
	기업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
	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경우는 3개월이 지
	난 때로 한다.
3. ~ 11. (생 략)	3. ~ 11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